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명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38 발의연월일: 2025. 2. 18.

발 의 자: 강명구 · 이인선 · 엄태영

임이자 • 배준영 • 구자근

서명옥 · 김태호 · 김 건

이성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익법인 등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.

이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부자가 부동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어도 기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 단체가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,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 우를 제외함으로써 기부행위가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등 방법으로 악 용되는 것은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2절에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4(기부금단체에 대한 감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)가 무상으로 양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를 각각 면제한다.

- 1.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을 받는 자
- 2.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자로한정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부금단체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40조의4(기부금단체에 대한 감
	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	해당하는 자(「독점규제 및 공
	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
	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
	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
	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)가
	무상으로 양여받은 부동산에
	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
	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
	부과액을 포함한다)를 각각 면
	<u>제한다.</u>
	1.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
	1호의 특례기부금을 받는 자
	2.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제
	1호의 일반기부금 또는 「소
	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의
	일반기부금을 받는 자로서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과세기
	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「주
	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
	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
	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자

로 한정한다)